

Research Ethics and Laws Related to Survey Research in Clinical Psychology

Sung-Won Moon[†]

Department of Psychology, Woosuk University, Wanju, Korea

Psychologists explore human behavior using scientific methods. The survey method is the most cost efficient research methods psychologists use. Clinical psychology research papers, including most research articles published b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frequently employ this method, which includes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s. However, the survey method is regulated by several laws, such as the research ethics law, bioethics law, copyright law, and privacy law. The whole structure and every elements of a survey comprise the expressions that are protected by the copyright law and the respondents of the survey are human subjects who are protected by the bioethics laws. The collected data in the survey conta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ed by the privacy law, and the resultant research paper is governed by the research ethics law. This study examined these laws from clinical psychologists' perspective. Although ethics should encompass most laws, the ethical principles for the Korean Association of Clinical Psychology were poorly connected to related laws; the code of conduct are unclear and inconsistent compared to related laws, and they do not represent the core concept and general principles of Ethics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integrity). A comprehensive, active revision of the ethics laws for clinical psychologists is required to match the trends of related laws; furthermore, proactive action and discussion among psychologists is needed.

Keywords: psychological assessment, survey, copyright law, bioethics law, privacy law, research ethics

심리학이란 인간의 행동과 정신 과정을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심리학자들은 과학적 방법을 가지고 과학적 태도를 갖추며, 관찰을 하고 이론을 형성하며 새로운 관찰의 견지에서 이론을 다듬는다(Myers, 2004). 이 과정에서 심리학자들은 행동을 기술하는 관찰들을 하고, 행동을 예측하는 데 보탬이 되는 상관들을 탐지하고, 행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험을 한다(Myers, 2004). 기술 연구와 상관 연구 모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설문지 방법이다. 설문지 연구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효율성이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는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설문지 연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고는 설문지를 인쇄하고 복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설문지를 보내고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정도밖에 없다(Nachimas & Nachimas, 1981). 설문 방법도 이제는 더 다양해져

서 심지어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실시가 가능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비용이 더 절감되서 설문지 복사나 발송 비용조차도 들지 않는다. 이처럼 적은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으면서도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설문지이다. 또한, 설문지는 선별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분류 및 진단을 돕는 데 사용될 수도 있으며, 목표 행동의 정도, 빈도 및 지속 기간을 수량화하는 데, 그리고 치료 과정과 치료 성과를 수량화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Jensen & Haynes, 1986). 따라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KJCP)를 포함해서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상당수는 설문지 연구 방법을 사용한 논문들이다.

가령, KJCP에 최근 3년간 게재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설문지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특별호를 제외한 최근 3년간의 KJCP 게재 논문들의 방법론을 살펴본 결과,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2018년 KJCP 37권 1호에 게재된 10편의 논문 중에는 설문지를 사용하지 않은 논문이 한 편도 없었으며, 다른 호의 KJCP 논문들을 살펴보더라도 설문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많

[†]Correspondence to Sung-Won Moon, Department of Psychology, Woosuk University, 443 Samnye-ro, Samnye-eup, Wanju-gun, Jeollabuk-do, Korea; E-mail: drswmoon@woosuk.ac.kr

Received Nov 1, 2018; Revised Dec 15, 2018; Accepted Dec 16, 2018

Table 1. Number of Articles Using Survey in KJCP

Vol. (no.)	Survey	Non-survey
37 (3)	10	3
37 (2)	9	2
37 (1)	10	0
36 (3)	9	3
36 (2)	8	2
36 (1)	9	3
35 (4)	10	4
35 (3)	9	1
35 (2)	10	2
35 (1)	12	3

Note. KJCP =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대다수의 논문들이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과연 그 과정들이 윤리적으로나 혹은 법적으로 적절한 과정과 절차에 근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한국심리학회안에서 설문지의 적절한 이용과 관련된 명문화된 지침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은 2001년에 제정된 ‘학술 논문 작성 및 출판 지침’을 통해서였다. 이후 2003년 8월에 한국심리학회 윤리규정이 발표되었고, 2012년에는 학술 논문 작성 및 출판 지침 2판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이 발표되었다. 논문 투고 시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는 이들 규정 및 지침 이외에도, 미국 심리학회의 윤리규정과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학 교과과정을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윤리 과목은 따로 개설해 놓고 있지 않고, 이러한 관련 규정이 학회 안에 등장하게 된 것이 아직 20년이 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설령 학회에서 이러한 여러 규정을 언급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일반 회원들이 정확히 알기란 어렵다. 한국심리학회나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는, 논문을 투고할 때 KCI 문헌유사도 검사서비스를 이용한 결과를 올리도록 하고 있고, 국내외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형태의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윤리 협약 및 저작권 이전 동의서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연구 윤리 수준을 갖추도록 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연구윤리교육이나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들 모두 사용하는 시스템이어서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원들에게 맞는 구체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며 협약서나 동의서는 내용이 막연하다. 우리 학회 규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윤리 규정과 진실성 심사 운영 세칙이 있을 뿐 연구자가 설문

지를 이용해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KJCP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의 두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는 한국임상심리학회의 학회지 발간규정이 연구윤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들에 대한 준수 의무를 논하고 있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들어 연구의 영역은 과학적 견지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법과 윤리의 측면에서도 신중히 접근되어야 하는 영역이 되었다. 2004년에 생명윤리법[법률 제7150호, 2004.1.29., 제정], 2007년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 지침”)[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 2007.2.8., 제정],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등이 연달아 제정되었기 때문에, 연구를 함에 있어서 모든 연구자들은 일차적으로 이들 법규를 벗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더구나, 설문지 연구의 경우는 해당 설문지들과 관련되어 있는 저작권법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규들이란 기본적으로 강제성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연구와 관련된 법규들은 그저 어렵고 낯선 영역의 문제들일 뿐이다. 한국임상심리학회지에 투고를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연구윤리 협약 및 저작권 이전에 대한 동의서’에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모든 측정 도구의 저작권을 보호하였음(예: 국내 출판사를 통한 정식 구입, 원저자의 허가 등)”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고 있고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려들이 사전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모두 다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체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연구와 관련된 연구 윤리와 관련 법규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향후 학회가 연구자들을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보완책들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윤리 지침, 생명윤리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중 설문지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보고 한국임상심리학회 규정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고, 이에 따른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설문지 연구와 관련된 연구윤리 지침

생명윤리법이든 저작권법이든 이제는 임상심리학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관련법들이 많지만, 우리가 임상심리학자로서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법에 앞서서 윤리적인 심리학자가 되려고 애쓰는 일이다. 윤리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추상적 규범이기 때문에, 윤리에서는 인간답게 사는 긍정적 의미의 질서를

우선적으로 언급해야 한다(Chung, 2010). 그런 의미에서 학회에서는 연구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윤리적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개를 하거나 혹은 연구윤리와 관련된 유용한 자료들을 링크 등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연구 윤리와 관련된 논쟁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4년에 황우석 교수가 세계적인 학술지 Science에 인간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면서였다. 논문에 사용된 자료의 취득 과정이 윤리적이었는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논문에 포함된 자료조차도 조작된 것이었음이 드러나면서, Science에서는 2004년 황우석 교수를 포함한 15명의 저자가 발표한 논문과 2005년 25명의 저자가 함께 발표한 논문을 조작된 자료가 포함된 연구 부정 논문으로 최종 결론 내리고 이들 논문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Science, 2006). 황우석 교수와 관련된 많은 논문들과 또 황우석 교수와 관련된 연구자들이 발표했던 많은 논문들이 다시 조사되기 시작되면서 마침내 2007년 교육부에서는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 발표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이후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는 훈령을 계속해서 개정 보완해 왔고, 부당한 저자 표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 지침은 2018년에도 다시 또 개정되었다[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연구윤리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를 발표하였다(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5).

설문지를 사용한 연구이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모든 임상심리학 연구 논문들은 전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장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지침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사항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가 모두 연구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최근 개정에서는 부당한 저자 표기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면서,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서 대학 교원인 경우는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정확하게 밝히고 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논문에 밝히도록 하였으며, 학술 단체는 해당 논문의 모든 공동 저자들에 대해 소속과 직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8). 이는 저자로서 포함되어야 하는데 포함이 되지 않는 문제와 저자로서 포함될 수 없는데 저자로 포함되는 문제를 모두 예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구 부정 행위를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정직성’이다. 따라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관행에 의해서든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에 의해서든 기만이나 부정직 행위가 발생한다면 궁극적으로 해당 논문은 연구 부정 행위에 연루되게 된다. 먼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표절이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나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즉,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모두 표절에 포함된다.

가령, 임상심리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에 설문지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연구 주제에 맞는 심리검사 척도를 검색을 통해서 얻어냈다고 했을 때 윤리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연구자가 해야 할 일은 그 척도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는 일이다. 만약, 연구자가 찾아낸 심리검사 척도에 대해서 출처 확인을 해 보았다니 정확한 원 출처도 확인이 안 되고 원 문항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연구자는 이 단계에서 이 척도에 대한 사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거나 정확한 원 출처가 누구인지 찾아낼 때까지 계속 확인을 거듭하며 최초의 문항 개발자를 확인해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서 적당히 원출처를 수정해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의 출처를 연구자가 논문에 자신의 출처로서 소개한다면 이는 윤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기만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즉, A라는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에 ‘B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C(1998)의 D검사를 사용하였다’고 기술하였으나, 1998년에 발행된 실제 C의 논문에는 ‘E(1993)가 만든 F검사에서 일부 문항을 변형시켜서 사용하였다’고 적혀있다면, A 연구자는 D검사란 원래 C(1998)가 만든 것이 아니라 E(1993)가 만든 F검사를 C(1998)가 부분 수정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논문에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기만 행위를 한 것이다.

표절은 적절하게 인용을 하지 않고 원저작물 속에 있는 정보나 아이디어 혹은 어구 등을 따와 자신의 것인 척하는 속임수, 훔치는 행위를 일컫는다(Lee, 2007).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이디어 또한 표절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Lee, 2007). 이는 저작권법과 구별이 되는 부분이어서, 표절이 저작권법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자들을 보호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의 경우 누가 먼저 등록을 하는가의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지만, 저작권에서는 표현의 탄생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을 더 우선시하며, 표절 판단에서는 표현까지 이루어지기 이전의 아이디어도 보호의 대상으로 본다.

Nam(2015)은 표절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만’이라고 보았다. 즉, 이유가 어떻든 혹은 상황이 어떻든 기만의 요소가 있으면 표절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公刊)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은 공간된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보다 더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표절에 해당한다(Nam, 2015). 가령, 다른 연구자와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때 들은 이야기를 논문에 그대로 포함시키면 다른 연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그 상대 연구자보다 더 빠르게 논문을 출판한다면, 이는 표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만 행위를 한 그 당사자는 이 행위에 기만의 요소가 있음을 행위의 순간부터 알고 있다. 특허의 경우 출원이나 등록 여부를 따지는 것에 비해 저작권에서는 언제 창작 행위가 있었는가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저작권법보다 표절이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연구자들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표절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국심리학회에서는 개인 간의 전화 통화나 대화를 통해 얻게 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것이 아닌 한은 ‘personal communication’이라는 방법으로 정확히 인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1).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부당한 중복게재란 이중게재, 토막논문(논문조각기), 덧붙이기 논문을 포괄한 개념으로(Lee, 2009),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인데, 여기서 관건이 되는 점 또한 정확한 출처 표기 여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이미 사용했던 자료임을 밝히지 않은 채 자료를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가령, 한 논문에서 5개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다른 논문에서 그중 3개를 또 다시 결과로 제시하는 경우는 이들이 모두 하나의 연구에서 얻어진 것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게재에 해당한다(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4).

중복게재는 하나의 논문이면 족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만들면서 자원을 낭비하고, 학술지를 출판하기 위해서 편집자나 동료심사자가 필요 없는 노력을 다시 기울여야 하며, 업적을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마치 새로운 저작물이 처음 출판되는 것처럼 독자들을 속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Lee, 2009). 설문지를 사용하는 연구들의 경우 한 번의 설문을 통해 여러 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부당한 중복게재의 유혹과 위협에 놓인다. 그러나, 하나의 설문자료에서 나온 변수들을 몇 개의

연구를 통해 나누어 발표하며 이들이 모두 하나의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각각의 별개의 연구로서 발표하게 되면, 한 사람의 반응이 여러 개의 논문에 중복적으로 사용되면 서도 그들 각각이 마치 다른 사람의 반응처럼 해석되게 된다.

임상심리학자들의 연구에는 설문지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당한 중복게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 학술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할 일은 비록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이라고 해도 이미 게재된 것을 이후의 학술지에서 활용할 때는 적절히 출처를 밝히는 것이다(Lee, 2009).

부당한 저자 표시 부분에 대한 강화된 규정은 공저자로서의 자격이 안되는데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일들이 급증하면서 비롯된 것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반대의 상황들이 더욱 심각하다. 즉, 마땅히 제1저자가 되어야 하는 연구자가 제1저자가 되지 못하게 되거나, 제1저자의 뜻과는 무관하게 엉뚱한 사람들을 공저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역시 제1저자의 뜻과는 무관하게 여러 편으로 쪼개져서 나뉘어진 논문들의 공저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당한 저자 표시 문제는 수직적 위계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게 되면 논문 이외의 부분에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당한 저자 표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부당한 저자 표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저자들의 소속과 신분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 분담 내용에 관해서 연구 단계별로 상술하는 정량화된 시스템 평가 방법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연구 윤리 지침을 계속해서 개정 보완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이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하며 연구자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임상심리학회 제 규정과 연구윤리 지침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구진실성 심사규정은 서문에서, 교육부가 제정한 교육부 훈령 제60호(2014. 3. 2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9조(연구윤리 자체 규정 마련)에 의거하여 자체 연구 진실성 심사 운영 세칙을 제정하여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안을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연구윤리 규정에서는 제2조 연구자의 윤리 제1항을 통해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5항을 통해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물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한국임상심리학회 연구진실성 심사 운영 세칙에서는 연구 부정 행위에 관해 제2조에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제3조에서는 출판 업적에 관해서로 각각 분리해서 다루었다. 3조 5항에 따르면,

학생의 학위 논문을 실질적 토대로 한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2008년에 연구윤리 규정이 발표되었고 2009년에 진실성 심사 운영세칙이 발표된 이후로 계속 같은 규정이 연구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으나,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이 계속해서 개정보완되고 있는 만큼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도 이에 따라 전면적인 정돈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설문지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법

2004년에 최초로 제정된 생명윤리법은 연구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즉, 생명윤리법[법률 7150호, 2004. 1. 29., 제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법에 제정되게 된 배경은, 1997년 2월 세계 최초의 복제 동물 “돌리” 탄생 후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인간복제 실험을 금지하는 입법을 촉구했던 것이 그 시초였다(Kim, 2015). 생명윤리법 제정을 통해 생식 세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생명윤리법의 전부 개정을 통해 규제 대상이 인간 대상 연구 전체로 확대되었는데, 이후 개정된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생명윤리 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다[법률 제11250호, 2012. 2. 1. 전부개정][시행 2013. 2. 2.]. 따라서, 인간 대상 연구 전체로 생명 윤리가 확대 적용되기 시작한 2012년 법 개정부터 심리학 연구들은 생명윤리법을 적용받기 시작했다.

인간대상 연구와 생명윤리법

생명윤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인간 대상 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2012년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 생명윤리가 인간 대상 연구전체로 확대 적용되면서 이에 관한 시행 규칙 또한 새롭게 제정되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3.2.2.][보건복지부령 제180호, 2013.2.1., 전부개정] 제2조(인간대상연구의 범위) 제1항 제1호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첫째, 사람을 대상으로 물

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둘째,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셋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임상심리학자들이 하는 연구들은 전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임상심리학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인간 대상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 혹은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신청하는데 이 위원회들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및 과학적 타당성,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연구대상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한국임상심리학회(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2018)에서는 KJCP 발간 규정 제14조에서 기관위원회 심의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14조 5항에 따르면, “모든 투고된 논문은 해당기관의 기관 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임상심리학회 윤리규정 내용이나 한국심리학회 윤리규정 내용 중에는 IRB의 심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IRB 심의를 받을 수 없는 연구자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용 기관 생명윤리위원회(<http://www.irb.or.kr>)를 거쳐 연구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회에서는 이 부분을 보다 상세히 안내해주는 것이 여러 다양한 회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용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서, 기관위원회가 미설치된 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이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이유로 인해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없는 회원들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이트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학회에서는 단순히 기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만 윤리규정에 명시해놓을 것이 아니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부분을 학회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모든 회원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윤리와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아동에 대한 연구와 생명윤리법과의 관계

생명윤리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서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아동, 즉,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

미한다. 임상심리학 연구자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모든 연구는 전부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려는 연구자는 법정대리인에게 연구의 목적,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알리고 이에 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아동을 연구대상자로 계획하고 있는 연구자는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준비 기간을 보다 더 길게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 중에는 성인용으로 개발된 심리검사 문항을 표현만 다듬어서 아동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동이 해당 문항의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가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이 과연 아동에게도 적절한가에 대한 철저한 검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작권법이 고려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연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만일 성인 대상 심리검사를 아동용으로 고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그 심리검사가 일반에게 무상으로 공개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래의 심리검사 개발자에게 성인용 심리검사를 아동용으로 고쳐서 사용하려고 하는 자신의 연구 목적과 문항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생명윤리법과 저작권법에 관해서 저촉되지 않고자 하면서, 성인용으로 개발된 심리검사 문항을 아동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일차적으로 원 심리척도 개발자에게 이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술지에 투고되고 있는 다수의 논문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이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제 규정은 학회 안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역시 아동 대상 연구에 관한 별도의 연구 윤리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미국심리학회의 경우 12번 분과인 Society of Clinical Psychology 분과 안에 다양한 관련 자료가 있고, 53번 분과 학회인 Society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에도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은 언제든지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웨비나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도 있으며, Society of Clinical Psychology의 section 9는 Assessment Psychology에 관해서 다르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제규정과 생명윤리법과의 관계

KJCP는 학술지 투고 시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

view Board, IRB)에서의 심의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IRB 승인을 받은 연구는 이를 원고의 방법란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Korean Clinical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8). 또한, 한국임상심리학회 산하 학술지인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8)의 발간 규정 14조 1항에서는 투고자, 저자, 및 심사자는 가장 최신판의 한국심리학회의 <연구윤리규정>, 한국심리학회의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지침>, 미국심리학회의 <APA 윤리규정>,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및 법규를 숙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놓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회에서는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놓았을 뿐 이 법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숙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임상심리학회의 발간 규정은 안내를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서만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생명윤리법이 있으니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생명윤리를 지키도록 요구하기보다는, 임상심리학자의 수련과정에 생명윤리법 숙지 절차를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학회나 연구자가 속한 기관 혹은 국가 기관에서 무상으로 혹은 적은 비용으로 연구윤리 과정을 개설해놓고 있다. 가령, 연구자들은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에서 여러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학회에서는 이들 정보들 중 우리 임상심리학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부분을 따로 학회 사이트에서 다루어줌으로써 회원 간에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다.

설문지 사용과 관련된 다른 법규들보다도 임상심리학자의 정체성이나 기본 입장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이 생명윤리법이기 때문에 생명윤리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입장을 학회안에서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생명윤리의 기준이 되는 생각과 생명윤리의 성립 과정과 성립 이유 그리고 구체적인 원칙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자적인 교육(Kim, 2006)이 수련생과 전문가 회원들 모두에게 필요하다.

설문지 연구와 관련된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문화의 향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저작권자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도모’라는 두 개의 축을 통해서 문화의 향상 발전을 이끈다(Hong, 2015).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를 제한한다. 권리의 보호와 이용의 도모는 상충하는 이해관계에서 저작권 정책은 항상 권리와 이용의 균형을 고려한다. 마찬가지로, 현재 KJCP에 투고하거나 혹은 KJCP를 읽는 독자들은 임

상심리학이라는 학문 영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과 다른 연구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 사이의 균형 안에 놓인다.

먼저, 저작권법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저작권법[법률 제 4325호, 1957.1.28 제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률 제9625호, 개정 2009. 4. 22]. 이 법[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2016.3.22]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KJCP의 논문들이 다루고 있는 설문지는 저작권법[법률 제14634호, 개정 2017.3.21 개정] 제2장 제4조에 의거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자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도모 중 먼저 저작권자의 보호와 관련해서 살펴보자면,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부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제2장 제2절 제10조와 제3절 제14조 1호이다. 먼저 제10조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은 특허법[법률 제 15582호, 2018.4.17., 일부개정]과 비교되어 설명될 수 있는데, ‘특허 발명’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하며,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이다. 즉, 특허법에서는 권리의 발생이 특정 절차나 형식의 이행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이와 무관하게 저작물의 발생 시점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와 관련해서는 언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했느냐가 관건이라면,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누가 언제 창작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평가 도구 혹은 다수의 심리평가 도구를 모아서 만든 설문지의 저작권은 해당 도구의 창작 시점부터 발생한다. 가령, 설문지의 제작 시점과 설문지의 학술지 공개 시점 중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설문지의 제작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보호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지만 임상심리 연구자들은 알기 어려운 일신전속성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따로 구분해서 설명하였다.

일신전속성을 가진 저작인격권

저작권법 제3절 저작인격권 제14조 1호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조항에 따르면 저작권은 일신전속된다. 일신전속성이란, 법률에서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속성을 말한다[대법원 1995. 10. 2. 자 94마2217결정]. 따라서, 저작물의 창작 시

점부터 발생한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권자에게만 귀속되며, 저작권법 제14조 2호에 따르면 저작자가 사망을 한 후라고 하더라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공표 여부, 저작물에 대한 성명 표시 권리,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 공표권 조항에 의거해서,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는 저작자에게만 있으며, 제12조 성명표시권 조항에 따라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하고,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조항에 따르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자신이 만든 그대로의 내용과 형식으로 유지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많은 연구자들이 혼동을 하는 부분은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조항에 의거해서,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만이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지만,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은 저작재산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학술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고 게재하는 경우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해당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는 저자로부터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를 받는 것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A, B, C, D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던 중 설문지를 함께 개발했다면 그 설문지의 공동 개발에 대한 권리는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이후의 공동연구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원래의 A, B, C, D 연구자들 중 일부가 빠지고 A, B만이 논문의 저자가 되어서 논문을 발표하더라도 해당 설문지에 대한 저자는 A, B, C, D로서 공표되어야 하며, 통계 분석을 위해서나 역시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새로운 연구자인 E, F가 논문의 저술 단계에서 새롭게 포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논문의 내용에서는 설문지의 원저자는 A, B, C, D이며 E, F는 설문지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합류한 연구자라는 점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교수와 학생이 함께 공동연구를 하던

중 학생이 설문지를 완성하고 나서 해당 교수가 그 학생을 배제시키고 다른 교수와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게 되더라도 해당 교수는 학생의 이름을 설문지의 공동 저자로서 논문에 명확히 표기할 의무를 지닌다.

국내외 영리/비영리적 목적의 심리평가 도구들과 저작권

심리평가 도구를 사용하는 설문지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심리평가 도구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된다. 연구자가 직접 자신의 연구에 사용할 설문지 내용 전부를 개발한다면 상관이 없으나 만약 다른 사람이 이미 개발해 놓은 도구들을 설문지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연구의 준비 과정에는 이들 도구들의 저작권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문지가 국내에서 개발된 심리평가 도구를 사용하는지 혹은 해외에서 개발된 심리평가 도구를 사용하는지, 영리적 목적으로 개발된 심리평가 도구를 사용하는지 혹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개발된 심리평가 도구를 사용하는지, 단일 심리평가 도구만을 사용하는지 혹은 여러 개의 심리평가 도구들을 묶어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연구자들이 고려해야 할 저작권법 사항은 각각 달라진다.

이들 중 절차적인 측면에서 가장 간단한 때는 연구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된 비영리적 목적의 심리평가 도구를 연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연구자가 해당 도구의 저작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사용 목적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한 허락을 구하면 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특정 저작물이 많은 사람에게 인용이 되며 널리 보급이 되면 저작자에게 좋은 것이니 저작자 출처만 제대로 밝혀서 널리 사용하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는 연구자들의 편리에 근거한 오해에 불과하다. 저작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개발한 그대로의 원형을 유지한 저작물이 활용되는 것이지, 저자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수정과 변경을 가한 저작물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특정 심리평가 도구를 개발한 저작자가 해당 도구를 저서에 공개해 놓은 경우 해당 저서의 복제와 배포에 관한 지적재산권은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가 일부 양도받았을 수 있으나 저작권은 여전히 저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해당 저서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그 저서 속의 심리평가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출판사가 아닌 저자에게 별도로 그 도구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특정 연구자 A가 해외심리평가자 B가 저술한 C라는 책을 번역했고 그 책에는 D라는 심리평가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번역을 맡았던 임상심리학자 A나 혹은 B라는 도서를 구입한 임상심리학자들은 D라는 평가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B에게 공식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연구자가 연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와 다른 언어로 개발된 비영리적 목적의 심리평가 도구에 대해서는 역시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구해야 한다. 비영리적 목적으로 개발된 심리평가도구라고 하더라도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다른 언어로 번역돼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미 다른 언어로 해당 저작물을 번역해놓은 것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 경우는 원저작자에게 연락을 해서 그 번역물을 사용하고자 한다는 점을 밝히고 허락을 구해야 하며, 그 저작물을 번역한 사람에게도 허락을 구해야 한다. 이 경우는 저작자가 원저작자와 번역한 저작자로 구분이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2장 1절 제5조 2차적 저작물 조항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A라는 저자가 개발한 B라는 설문지가 있고 C라는 한국임상심리학자가 이를 번역해서 KJCP 논문에 사용했고 KJCP 논문을 읽던 한 독자가 한국어로 번역된 B를 사용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의 연구에 B를 사용하고 싶다는 것과 B를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 이용하고 싶다는 것을 밝히고 허락을 구하는 일이다. 이때 A가 B를 번역해서 연구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 번에는 C에게 연락을 해서 C가 만든 한국어 번역판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관해서 허락을 구하고 A에게는 C가 번역한 B를 사용할 것임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

세 번째로, 해외에서 개발되었고 국내연구자가 이를 번역해서 사용한 바 있는 영리적 목적의 심리평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절차상 가장 복잡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에 대한 허락을 얻기 위해서 원저작자와 2차적 저작물의 저자인 번역자, 저작재산권 일부를 양도받은 해외출판사 모두를 대상으로 연락을 하고 허락을 구해야 한다. 현재 국내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거나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국내 연구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번역자에게만 연락을 해서 사용 허락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는 적법하지 않은 행위이다. 원칙적 순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개발된 영리적 목적의 심리평가 도구를 사용하려면 제일 먼저 해외 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후, 출판사에 다시 연락을 해서 해당 심리평가 도구의 사용에 관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약 해당 도구의 국내 번역판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해외 출판사에서는 이 단계에서 해당 도구의 한국어 번역판과 그 번역판의 신뢰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

게 되는데 만약 연구자가 기존의 번역판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 단계에서 한국 번역자에게 연락을 해서 저자와 출판사에게 해당 도구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았는데 그 한국어 번역판을 사용하고 자 하니 허락을 해줄 수 있는지 다시 또 허락을 구한 후 해외 출판 사에 기존 번역판을 사용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결론적으로, 설문지 연구를 하고자 하고 그 설문지에 다른 사람들이 개발한 심리평가도구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심리평가도구의 원저작자는 말할 것도 없고 출판사나 학술지 혹은 번역자를 포함해서 모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허락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연구자로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대상들이 각기 다른 권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문의 발전을 위한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설문지 이용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저작권법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축은 저작권자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도모이다.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은 저작권법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아니므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자를 엄격히 보호하되 우리 임상심리학자들은 임상심리학자로서 다른 임상심리학자들과 협력해서 우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역할 또한 가진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과연 무엇이 공정한 이용인가 하는 점이다. 공정 이용(fair use)이란 저작권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권리에 불구하고 그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특권, 공평법상의 합리성의 원칙 또는 법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저작권자가 이용을 예견하였으며 이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이론에 따라 합리적이고 관계적인 것으로서 허용된 이용, 또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 법원에 의하여 창조된 것으로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된 방어수단 등으로 정의된다(Lee, 2000).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는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¹⁾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

야 한다.²⁾ Lee(2000)에 따르면, 공정이용은 배타적인 저작재산권에 우선하는 이용을 허용하는 권리지만 저작권인격권은 배타적인 저작 재산권보다 더 넓은 보호를 추구하기 때문에³⁾ 본질적으로 공정이용과 저작권인격권은 서로 공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인격권을 존중하면서 공정이용을 통해 임상심리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비영리적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라면 저작권자가 개발한 그대로의 저작물을 저작권자를 정확히 밝히면서 다같이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의 오해는, 연구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행위이든 용인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인데, 연구 목적이라는 점이 공정이용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만약 A라는 연구자가 B라는 도구를 개발하면서 그 도구는 반드시 성인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간주하였다면, C라는 연구자가 연구목적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논문에서 B를 아동용으로 문장만 고쳐서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이용이 아닐 수 있다. 공정이용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황금 룰이라고 표현되어 온 “타인이 당신으로부터 (저작물을) 이용했다면 당신이 분개할만한 정도나 방법으로 당신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상의 지침(Lee, 2000)을 고려할 수 있다면 한국임상심리학회의 연구들은 충분히 공정이용과 저작권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논문들이 설문지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것을 엄격한 허락에만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상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옹호하는 것이 될 수 있으나 다음의 몇 가지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다면 충분히 양쪽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처음부터 영리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의 경우는 설령 연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모든 허락 단계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것이 좋고, 만약 비영리적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임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개발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인격권을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논문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저작권인격권을 충족시키면서도 공정히 이용하는 방법은 원저자가 개발한 그대로의 도구에 손을 대지 않고 사용하되 만약 수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원저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다. 세 번째로, 원저자의 개발과 그 출처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역시 많은 연구자들이 오해하는 것은 간행물만을 출처로서

1) 저작권법 제35조의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 2까지, 제101조의 3부터 제101조의 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저작권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 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제38조 (저작권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인정하는 것인데, 윤리규정이나 출판규정을 보면 미간행물 혹은 개인의사소통 또한 출처로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편집저작물로서의 설문지

연구를 하면서 심리평가 도구를 단 한 개만 사용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여러 개의 심리평가 도구들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설문지를 만들어서 연구에 사용한다. 저작권법상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제1절 저작물 제6조 편집저작물 1항을 보면,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되어 있다.

다수의 심리평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설문지는 소재의 선택 및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연구자들은 연구할 변수들을 선정하고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선택 및 조합하며 척도에 포함될 문항을 취사선택 및 배열함에 자신들의 창작적 개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척도 등의 선택과 조합 등은 단순히 설문조사 과정뿐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연구 전체의 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수의 심리평가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설문지를 연구 과정에서 개발하게 된다면, 연구 논문과는 별도로 그 설문지는 편집저작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며 저작권의 일신전속성에 의거해서 해당 설문지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은 그 설문지 자료를 이용한 논문에 대한 권리와는 별도의 권리로서 보호되게 된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편집저작물인 하나의 설문지가 개발되었고 그 후 그 설문지 자료를 이용한 논문이 발표되었다면, 설문지와 논문은 각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편집저작물 설문지라는 것은 A, B, C라는 평가도구들이 존재할 때 이들을 A, B, C를 묶은 하나의 세트로서 사용한다는 의미이지 A에서 일부 발췌하고 B에서 일부 발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 식의 변형은 저작권권에 대한 위반행위에 오히려 해당한다. A, B, C 평가 도구 각각의 전체 문항을 모두 사용하는데도 이것이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심리평가 도구들 중 이 세 개의 평가도구를 선택한 것은 그 선택을 한 연구자의 창작적 개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연구자는 우울을 평가하기 위해서 A, B, C라는 세 도구를 사용하지

만 다른 연구자는 D, E, F, G의 네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연구자는 A, B, C에서 C 대신 G를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은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성과에 따른 것이지만 무작위적인 선택이 아니며, 각 연구에 독창성을 부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임상심리학 논문들이 제 각각 사용한 평가 도구 모음은 편집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제 규정과 저작권법의 관계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는 학술지인 KJCP에서는 논문 게재 신청을 위해서 ‘연구윤리 협약 및 저작권 이전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Korean Clinical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8). 이 동의서를 살펴보면, 해당 논문이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모든 측정 도구의 저작권을 보호하였음’에 대해서 논문의 저자가 확인하도록 되어있고 최종적으로는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의 저작권(디지털 저작권 포함)을 한국임상심리학회에 이전할 것을 서약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 동의서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이 동의서에서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저작권’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동의서를 통해서 학회가 저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이익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에 대한 부분적 이익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국임상심리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려면 이 동의서에 서명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논문을 투고하려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그저 절차로서만 서명을 해서 학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적으로 이 동의서에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모든 측정 도구의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수반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한다. 한국임상심리학회지에서 위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동의서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학회 회원들에게 이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학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학술지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웨비나 내용 중에는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동의서를 수정하자면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에 대해서 저자가 평가하는 형태를 갖는 것이 될 수 있다. 가령, “심리평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문항을 수정한 경우가 있는가”,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문항을 삭제하거나 추가한 경우가 있는가”, “영리적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를 사용했다면 해당 출판사의 동의를 받았

는가” 등의 항목을 추가한다면 연구 목적을 위해서나 법적 분쟁을 막을 예방책을 위해서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설문지 연구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설문지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 모두의 측면에서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다루어진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규정되기도 하지만, 생명윤리법 제2조 18호에 따라서 규정되기도 한다. 생명윤리법 제2조 18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개인식별 정보, 유전 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임상심리학자가 연구를 통해서 얻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이 함께 규정하고 있는 법적인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의 관리와 보관 그리고 폐기에 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을 모두 준수하려면 대상자에게 정확히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 미리 알려져 이에 동의할 경우 정보를 얻어야 하며, 이렇게 해서 얻어진 정보가 어떻게 보관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생명윤리법 제19조 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에 따르면, 인간대상 연구자는 인간대상 연구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생명윤리법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인간대상 연구자는 연구대상연구와 관련된 기록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 중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에 따르면,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 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한다.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이 규정들은 임상심리학자의 연구자료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임상심리 연구 과정에서 얻은 설문 자료들은 3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보관 기간에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데, 정보의 주체가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정보를 연구자가 무한히 가지고 있을 수는 없

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임상심리연구를 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와 생명윤리법 제18조의 개인정보의 제공 조항들이다. 연구 자료의 형태로 취득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생명윤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자는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도 역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임상심리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밝히고 연구대상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것과 별개의 연구를 제3의 연구자와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경우는 아무리 기존의 설문자료를 그대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새롭게 심의를 받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한 번 취득된 설문 자료를 마치 연구자의 사유 재산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설문지 응답의 주체는 연구자가 아니라 연구대상자이기 때문에 응답자와 기관에 의해 사전에 허락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임상심리학회 제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임상심리학자들은 다른 분야의 심리학자들에 비해서 심리검사 자료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피검사자 자료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안에서 임상심리학자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관과 파기 그리고 자료 양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논 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와 관련된 법규들은 최근 들어 점점 더 엄격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2004년에 생명윤리법이,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교육부 훈령으로 발표되었고,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은 1986년, 2006년에 전부 개정되면서 저작물의 이용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임상심리학 연구를 둘러싸고 관련법들이 속속 제정되고 다시 또 개정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만큼 학회의 규정안에서 이들 법규들이 충분히 포괄될 수 있도록 학회의 제 규정에 관한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설문지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한 번에 많은 양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설문지 방법을 이용하는 연구를 선호하지만, 설문지는 그 자

체로서 편집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대한 명확한 숙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만 연구자들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설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윤리법을 준수해야 하며, 설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물론 설문지 방법을 사용하든 혹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든 연구의 최종 결과물은 학술 논문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기반해서 논문 작성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연구에서 설문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최선의 결정이지만, 효율적인 만큼 모든 관련 법규들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는 논문투고 시 저작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모두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규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따로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회원들이 모든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현재 임상심리학회 제 규정들을 살펴보다도 관련 법규의 제정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규정들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련 법규들과 학회 규정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회의 규정이 법보다 더 보수적이고 엄격해야 하나, 학회의 규정이 오히려 관련 법규보다 허술한 경우가 많은 점이다.

저작권법의 핵심은 표현에 대한 일신전속적 보호에 있고, 생명윤리법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기반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데 제정 취지가 있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성이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표절의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의 문제로서 접근이 된다. 관련 법규들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인 이해가 선행될 때만이 학회 규정들은 새롭게 제정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문지 연구를 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법규들을 철저히 숙지하고 학회 내부적으로 이 법규들보다 더 엄격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규정들을 통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한국임상심리학회의 관점 혹은 정체성을 수립하는 일이다. 임상심리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논문에서 언급한 각각의 법규들은 그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어렵고 까다로운 규칙들이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각 법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살펴보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임상심리학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정체성과 관련 법규들이 서로 모두 매우 유사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로서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이며, 이는 헌법 제10조를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로서 규정되어 있다. 임상심리학자들이 설문지를 사용해서 연구를 하며 엄수해야 할 네 가지 법규들 또한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생명윤리법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보호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심리학회 윤리규정 제3장 일반적 윤리 제11조 심리학자의 기본적 책무 규정을 보면 6항에 ‘심리학자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아울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법규들과 학회 규정이 궁극적으로는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관련 법규들이 심리학자들에게 낯설고 힘들게 여겨지는 이유는 임상심리학자들이 제 규정을 통해 추구하고 있는 정체성이 수많은 경험과 과정, 시행착오 끝에 얻어지고 이러한 정체성이 하나의 일관되고 통합된 생각으로 다시 각각의 윤리 규정들 안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외국 규정들을 참고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전체 규정이 만들어졌고 이런 과정에서 전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심리학자란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책무를 지녀야 하는가에 대한 학회원 간의 치열한 고민 과정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규들에 맞춰서 학회 규정들이 빠르게 만들어지다보니 문서상에 존재하는 정체성과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정체성이 서로 통합 혹은 일관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독일의 법철학자인 Georg Jellinek(Jellinek, 1878)의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에 따르면, 학회의 윤리 규정은 적어도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이상의 수준이어야 하나, 학회 규정들은 오히려 현행법보다 충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관련해서도, Jellinek의 말은 우리 학회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어서 윤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다보면 관련 법규들은 저절로 다 지키는 상황이 되기보다는, 그 반대로, 법을 지키다보면 학회의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연구윤리 규정이나 진실성 시행세칙은 오히려 현행법보다 충분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표절의 가장 기본적 요소가 ‘기만’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기만 요소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모든 행위는 전부 잠재적 표절의 대상이 된다. 표절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것은(Nam, 2015), 표절 규정의 존재 이유가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 대한 존중과 기만없는 태도로 정직하게 독자들을 대해야만 한다는 독자들에게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절과 관련된 현행 법규가 인격권 측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한 학회 규정의 폭넓은 보완이 필요하다.

생명윤리법과 관련해서 연구자들은 먼저, 자신들이 만나는 설문지 응답자들은 그저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자료를 마련해주는 수단적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인간적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완성한 설문자료에 대한 결정권한은 연구자가 아닌 응답자에게 있으며, 이들의 응답 내용은 마치 사람을 대하듯 신중히 다루어지고 철저히 보호되어야 함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 속해있지 않으면서 독립연구를 시행하는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지지를 학회가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그 연구자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설문지 응답자들을 존중하는 한 방법이다. 기관에 속해있지 않으면서 독립연구를 시행하는 회원들은 기관위원회의 심의 과정은 거치지 않더라도 같은 정도로 연구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학회 안내 없이 연구자 개인이 각각의 사항을 정확히 충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윤리에 맞는 설문지 연구를 한다는 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는 정말 아동에게 맞도록 적합화된 안전한 연구만을 하고, 설문자료는 사전에 응답자들에게 허락받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설문지 문항에 포함된 단어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설문지 문항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여러 대상자들에게 유해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까지 신중하게 고려하는 연구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한 번 얻은 설문자료는 연구자 개인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오해하는 연구자들도 많지만, 설문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연구대상자에게 서면동의를 구한 범위에서 벗어나는 설문자료 이용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자료를 이용해서 최초의 연구목적과 다른 연구를 하려고 하거나 혹은 설문자료를 제3의 연구자와 공유하려고 하는 경우는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학회 규정을 통해서 마련되거나 혹은 웨비나 등을 통해 자료화하고 이를 회원들이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KJCP에 게재된 대부분의 논문들이 설문지를 사용한 연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학회 규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학회 차원에서 임상심리학자가 숙지해야 하는 저작권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가령, 많은 연구자들은 해외심리검사의 국내 사용 방법에 관해서 해외 저자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외 출판사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혹은 이미 이를 번역해서 사용한 국내연구자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 또한, 저작권과 표절의 문제는 각기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과 표절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저

작권 위반을 수반하는 표절도 있지만 저작권 위반을 수반하지 않는 표절도 있다(Nam, 2015). 또한, 저작권은 특허와 달리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더라도 표현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저작물로서 보호될 권리를 가지며 저작권격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흔히들 기존 문항을 임의로 수정하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저작권 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도 현재 우리 학회의 회원들은 연구 목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장 실무와 관련해서도 다량의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개인정보의 보관과 폐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교육이 학회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정보가 가지는 편의성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설문자료를 디지털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사용하지만, 많은 경우 설문자료 안에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의 보관에 대해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지키는 것을 숙지해야만 한다.

임상심리전문가들의 활동이 심리검사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심리검사 혹은 여러 개의 심리검사를 하나로 통합한 연구 설문지의 활용과 관련된 학회의 규정들이 관련 법규정보다 더욱 엄격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면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논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의 관련 규정들은 규정 자체가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만들어져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향후 학회 규정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회원뿐만 아니라 학생 회원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논의가 학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규정의 개선 이후에는 웨비나 혹은 익명의 질문 응답 게시판 운영, 윤리위원회의 자문 코너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윤리를 심리학과의 필수 교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은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일반 학회 회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윤리적인 연구자가 되는 것인지 알고 그에 맞춰서 행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과학자와 실무자로서의 균형은 우리 임상심리학자들에게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중요한 균형이고, 수많은 연구를 하고 다양한 실무를 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다. 이는 넓게 보면 동료 연구자들에 대한 존중, 우리 학회 회원 간의 상호 존중,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존중, 연구를 읽는 독자들에게 대한 존중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심리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설문지 연구 방법으로 더 많은 연구들을 하기에 앞서서 심리학자로서의 기본을 잃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 2014 Code of ethics. Retrieved from https://www.counseling.org/docs/default-source/ethics/2014-code-of-ethics.pdf?sfvrsn=2d58522c_4.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1).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hung, B. (2010). Search for implement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ethics. *Korean and Culture*, 10, 295-314.
- Hong, S. G. (2015). *Current status of copyright law in Korea and suggestions*. Korea Copyright Commission. Retrieved from <https://www.copyright.or.kr/kcc/common/cpis/file/displayImage.do?fileNo=5489>.
- Jellinek, G. (1878; 2nd ed., 1908). *Die sozialetische Bedeutung von Recht, Unrecht und Strafe {The social-ethical meaning of law, injustice and punishment}*. Berlin: Verlag von O. Häring.
- Jensen, B. J., & Haynes, S. N. (1986). Self-report questionnaires. In A. R. Ciminero, C. S. Calhoun, & H. E. Adams (Eds.), *Handbook of Behavioral Assessment* (2nd., pp. 150-175). New York, NY: Wiley.
- Kim, H. (2006). Society by rules and principles. *The Science & Technology*, 39, 76-77.
- Kim, H. S. (2015). Critical retrospection on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Forum for Bioethics*, 4, 1-7.
- Kim, M. (2012). Dealing with ethical issues in the fields of health psycholog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7, 767-780.
-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2018). *Submission guideline*. Retrieved from http://www.kcp.or.kr/sub04_3_1.asp?menu-Category=4.
-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Publication manual*. Seoul: Pakyoungsa.
- Lee, D. (2000). A comparative law study on fair use in copyright law.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 10, 341-361.
- Lee, I. (2007). The Understanding of citation and plagiarism for establishment of the research ethics. *Ethics Research*, 66, 1-25.
- Lee, I. (2009). Problems of redundant publication and the establishment ways of research ethics. *Korean, Korean Society of Philosophical History*, 26, 305-323.
- Ministry of Education. (2015). *Revision of research ethics*. Retrieved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61183&lev=0&searchType=S&statusYN=W&page=90&s=moe&m=0503&opType=>.
- Ministry of Education. (2018). *Prevention of inadequate authorship*. Retrieved from <http://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486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
- Myers, D. G. (2004). *Psychology* (ed.), New York, NY: Worth Publishers.
- Nachimas, C., & Nachimas, D. (1981). *Research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s* (2nd ed.). New York: St. Martin's Press.
- Nam, H. D. (2015). *Plagiarism*. Seoul: Hyunamsa.
-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4). *Publication manual for engineering research*. Retrieved from http://www.cre.or.kr/board/download.php?board=textbook&no=1384677&file_no=3922.
-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5). *Manual for research ethics*. Retrieved from http://www.cre.or.kr/board/download.php?board=textbook&no=1386453&file_no=6010.
- Science. (2006). *Editorial retraction*. Retrieved from <http://science.sciencemag.org/content/311/5759/335.2>.

국문초록

임상심리 설문지 연구와 관련된 연구윤리 및 법규들

문성원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을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연구한다.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과학적 방법론중에서도 가장 비용효율성이 높은 것은 설문지 방법이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심리학 연구들은 설문지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에 게재되는 거의 대부분의 논문들 또한 설문지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설문지를 사용하는 연구들은 설문지 연구의 높은 비용효율성이 가지는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설문지의 사용과 관련된 여러 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받는다. 설문지를 사용하는 연구는 설문지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고 설문지의 대상이 인간인 만큼, 저작권법과 생명윤리법을 비롯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까지 모두 준수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한국임상심리학회 혹은 한국심리학회 제 규정 안에는 이들 법규를 충족시킬 만큼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항이 없고, 학회에서는 이들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저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로서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적절한 연구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연구와 관련될 수 있는 법규들과 학회의 윤리규정 조항들을 살펴보고 향후의 규정 보완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설문지, 심리평가도구, 저작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연구윤리